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해시설 철거 의무화 및 합동단속·정보공개 근거 마련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36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위해시설 철거 의무화 및 합동단속·정보공개 근거 마련	3
--	---

※ 참고자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3
-------------------------------	----

2. 불법 금지시설 유형별· 시도별 현황	1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5.
3.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학습 등 교육 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해시설 철거 의무화 및 합동단속·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해시설에 대해 철거명령 및 대집행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경찰청장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그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② _____

--하여야 한다.

③ _____

-----요청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합동단속의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단속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안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음¹⁾.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교육환경법 제9조²⁾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1)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참고자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을 허용하고 있음(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제9조에 열거된 모든 행위 및 시설 금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 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금지행위·시설의 실질적 통제와 집행력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법 제10조는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교육감에게는 지자체장이 위와 같은 철거명령 내리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였음³⁾. 다만 해당 규정은 모두 재량규정의 형태로, 지자체장

3) 교육환경법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과 교육감에게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12조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와 위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제16조는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⁵⁾.

□ 그러나, 2025년 6월 기준,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132곳, 신변중업소·성기구 취급업소 38곳 등 총 186곳의 위해시설이 불법으로 존속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⁶⁾.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교육환경법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5) 교육환경법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구체적인 유형별, 시도별 현황은 ‘참고자료 2: 불법 금지시설 유형별·시도별 현황’ 참조.

< 유형별 불법 금지행위·시설 현황(2025.6. 기준) >

유형	구분	개수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절대금지	132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절대금지	38
노래연습장업	상대금지	4
숙박업·호텔업	상대금지	4
게임제공업 등	상대금지	4
그 외	상대금지	3
합계		186

* 충북(43), 충남(4), 전북(1), 경북(70)
 자료: 교육부

경찰이 학기 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로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발동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철거명령 발동이 의무가 아닌 재량에 속하며, 행정소송의 위험과 행정·재정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그 결과,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업소명을 변경하며 장기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또한 존재함⁷⁾.

□ 이에 개정안은 ① 기존의 재량에 의한 지자체장의 철거명령·대집행, 교육감의 철거명령 요청을 모두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② 교육감·지자체장·지방경찰청장 합동단속 및 그 결과, 사후조치 공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철거명령·대집행 및 철거명령 요청이 의무화됨

7) “학교·유치원 앞인데”...경찰 단속에도 11년째 성매매 업소 운영 딜미(헤럴드경제, 2024.11.17.)
 교육환경보호구역서 '버젓이'...경찰, 성매매업 27개소 폐쇄(뉴시스, 2025.2.21.)
 적발돼도 살아남는 학생보호구역 '퇴폐업소' 논란(아시아투데이, 2025.4.24.)

에 따라 불법시설 적발 시 즉각적이고 기속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교육환경법상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교육감, 지자체장, 지방경찰청장의 합동 단속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각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단속의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 또한 알리도록 하여 적발된 위해시설이 장기간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기속규정의 형태이나, 우리나라의 입법례에서 철거 명령 및 대집행은 재량규정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⁸⁾. 이는 강제력 행사로 인한 개인 자유·재산권 침해, 공권력 남용 위험, 사회적 여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요건의 충족만으로 곧바로 철거명령·대집행을 의무화하기 어려웠던

8) 「건축물관리법」

제21조(사용제한 등)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됨.

- 둘째, 기존 철거명령·대집행 저조의 원인으로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는 소송 부담, 행정·재정 소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해당 조치를 의무화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개정안이 기속규정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철거명령의 요건에는 재량이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집행의 일관성 확보와 법 적용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현장 집행에서도 재량 행사의 여지가 남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상을 종합할 때, 교육환경법의 집행력 및 시설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무화 자체로 행정 집행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강제조치에 따른 권리침해 위험, 실제 집행의 사회적 파장까지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철거명령·대집행 의무화 관련 >
○ 교육부: 신중검토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지역 특수성 및 주민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교육감의 재량권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철거명령·대집행은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제89조(대집행), 「건축물관리법」제21조(사용제한 등),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등
○ 경남교육청: 신중검토 - 철거명령·대집행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면, 지자체·교육청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유발하며, 지역의 특성 및 개별 사정 등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게 됨
○ 충북·경북교육청: 신중검토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지역경제 및 주민생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철거·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 철거 등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인근 주민과의 갈등 및 지자체·축산업자간의 불신 등 사회적 갈등 심화가 우려됨
< 합동단속 및 사후조치 공개 관련 >
○ 교육부: 일부수정 - 합동단속은 불법금지행위·시설을 적발·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속대상을 법 제9조에 따른 금지 행위·시설로 명확히 할 필요 - 금지시설에 대한 철거 등 사후조치는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소관이므로,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므로, 공개대상에서 ‘사후조치’를 제외할 필요
○ 서울, 경남교육청: 신중검토 - 불법시설 단속·처분은 경찰청장·지자체장의 권한이므로, 교육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중복 및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 불법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등의 조치는 지자체장의 소관이므로, 이를 교육감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보공개 시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자나 지역 주민과 과도한 갈등 유발이 우려됨.

○ 부산교육청: 신중검토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을 이미 공개하도록 하므로, 개정실익이 없음

○ 경기교육청: 이견없음

- 지자체·경찰의 합동단속 참여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협조에 미온적이므로, 지자체·경찰의 합동단속 참여에 대한 의무화(법제화) 필요성에 공감

문 의 처

02)6788-5184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중증·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참 고 2

불법 금지시설 유형별· 시도별 현황(매년 6월말 기준)

< 유형별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30	207	195	219	204	186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121	129	140	136	131	132
전화방·화상방	2	0	0	0	0	0
성기구취급업소	10	13	8	5	6	3
신변종업소	69	44	38	40	40	35
액화석유가스제조·충전·저장시설	1	1	1	1	1	1
폐기물수집·보관·처분장소	0	0	0	1	1	0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1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1	0	0	1	4
게임물시설	2	5	0	28	14	1
당구장	2	0	<'21.9.24. 삭제, '22.3.25. 시행>			
무도학원·무도장	1	1	0	0	0	0
노래연습장업	8	4	4	4	4	4
유흥·단란주점	1	2	0	0	1	0
유흥주점	0	0	1	0	1	0
단란주점	0	0	1	1	1	1
숙박업, 호텔업	3	2	2	3	3	4
만화대여업	8	5	<'21.9.24. 삭제, '22.3.25. 시행>			

< 시도별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30	207	195	219	204	186
서울	35	20	11	6	10	5
부산	28	15	11	13	11	12
대구	4	3	3	5	4	3
인천	6	6	6	6	7	9
광주	4	6	5	32	18	4
대전	4	1	0	0	0	0
울산	0	0	0	0	0	0
세종	5	5	5	5	5	5
경기	31	29	27	30	28	26
강원	0	3	0	0	0	0
충북	58	47	47	44	44	43
충남	9	8	7	5	5	4
전북	5	5	4	4	0	1
전남	2	2	0	0	2	3
경북	38	57	69	69	69	70
경남	0	0	0	0	1	1
제주	1	0	0	0	0	0